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스포츠유산과를 폐지하고, 한류지원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 정책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종전 스포츠유산과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스포츠유산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의 일부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5호 중 “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정동극장·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국악방송·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서울예술단·국립극단·국립현대무용단과”를 “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국립정동극장·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국악방송·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서울예술단·국립극단·국립현대무용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스포츠유산과를”을 “스포츠유산팀을”로, “스포츠산업과장 및 스포츠유산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스포츠유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유산과장”을 “스포츠유산팀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2명, 행정주사 2명”을 “3명, 행정주사 1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7”을 “16”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을 “4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7”을 “16”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을 “42”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4”를 “185”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9”를 “178”로 한다.

별표 14 2)를 삭제하고, 같은 표 3) 및 4)를 각각 2) 및 3)으로 하며, 같은 란(종전의 4)) 평가기간란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를 “1명(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별표1(체육국 스포츠유산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별표1의2(체육국 스포츠유산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별표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유산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체육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⑪ (생략) ⑫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u>국립중앙극장 · 국립국악원 · 예술의전당 · 정동극장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국악방송 · 국립발레단 · 국립오페라단 · 국립합창단 · 서울예술단 · 국립극단 · 국립현대무용단과 관련된 업무</u> 16. · 17. (생략) ⑬ ~ ⑰ (생략) 제14조(체육국) ① ~ ③ (생략) ④ 체육국에 체육정책과 · 체육진흥과 · 스포츠산업과 · 국제체육과 · 장애인체육과 및 <u>스포츠유산과</u> 를 두되, 체육정책과장, 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u>스포츠산업</u>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국립중앙극장 · 국립국악원 · 예술의전당 · 국립정동극장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국악방송 · 국립발레단 · 국립오페라단 · 국립합창단 · 서울예술단 · 국립극단 · 국립현대무용단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u> 16. · 17. (현행과 같음) ⑬ ~ ⑰ (현행과 같음) 제14조(체육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스포츠유</u> <u>산팀을</u> ----- ----- ----- ----- <u>스포츠산업과</u>

과장 및 스포츠유산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⑨ (생략)

⑩ 스포츠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장-----
----- 기술서기관
으로, 스포츠유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스포츠유산팀장-----
-----.

1. ~ 9.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3명,
행정주사 1명-----
-----.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분석팀은 <u>2022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4년 6월 30일</u>-----. ②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u>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u>은 <u>2023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② ----- ----- <u>1명(행정사무관</u> ----- <u>관</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 <u>17</u> ·	· · <u>16</u> ·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41</u> · ·	<u>42</u> · ·	+1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 <u>17</u> ·	· · <u>16</u> ·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41</u>	<u>42</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u>184</u>	<u>185</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u>179</u> ·	<u>178</u> ·	-1

